

---

#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

## I. 양형기준 수정의 필요성

-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정 형법이 2010. 10. 16.부터 시행되고 있음
  -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25년에서 50년까지로 각각 조정(제42조)
  - 사형에 대한 감경을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제55조 제1항 제1호)
  - 무기징역·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을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제55조 제1항 제2호)
  -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20년으로 상향 조정(제72조 제1항)
- ▣ 개정이유
  - 개정 전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 개정 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II. 외국의 입법례

### 1. 미국 연방

- ▣ 유기징역형 상한 관련
  - 유기징역형의 하한 및 상한에 대한 총론적 규정 없음
  - 법률에 의하여 특히 중한 범죄라고 생각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 상한을 규정하되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 유기징역형에 대하여 아예 상한이나 하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절대적 부정기형)도 있음
  - 우리 형법 제42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양형기준표에 의하여 도출되는 형기의 범위임
- 양형기준표 관련
- 법률에 규정된 형기와 양형기준표에 의하여 도출된 형기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형기가 우선함
  -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이 양형기준표에 의하여 도출된 형기 범위보다 높은 형을 하한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양형지침에 의하여 그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음
  - 대륙법계와 달리 경합범에 있어 가중주의가 아니라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이상씩 선고되는 경우도 있음

## 2. 프랑스

- 프랑스 형법의 개정
- 1981. 미테랑 대통령 당선 후 사형제 폐지 위한 형법 개정
  - 1994. 개혁 형법(1810. 형법 이후 최초의 전문 개정으로서, 법정형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짐)이 발효되어 현재까지 유효
- 현행 형법의 내용
- 자유형
    - 사형 폐지. 자유형은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구분. 유기형은 중죄(징역, 금고)와 경죄(구금)로 구분
    - 1994. 3. 1. 당시 경죄에 대한 유기형 상한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중죄에 대한 유기형의 하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한을 종전의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여 현재까지 유지
  - 법정형 가중
    - 형이 가중되는 경우로 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와 누범을 들 수 있음
    - 수죄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하고, 동종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의 상한 내에서 1개의 형을 선고함
    -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를 2배로 가중하며, 30년이 상한인 경우에는 무기징

---

역이 상한이 됨

● 중요 범죄의 법정형

- 보통살인(고의 살인) : 30년
- 모의살인(예비 또는 음모의 과정을 거친 살인) : 무기징역
- 5세 미만 미성년자, 직계존속, 직무수행 중인 사법관 등, 증인 또는 피해자 살인 등 : 무기징역
- 강간 : 15년
- 가중강간(15세 미만 미성년, 강간치상, 직계비속에 대한 강간, 공동강간, 무기사용) 등 : 20년
- 강간치사 : 30년

### 3. 일본

▣ 일본 형법의 개정

- 사형제 존치. 자유형(징역, 금고)은 무기형, 유기형으로 구분
- 유기징역형 상한의 상향 조정
  - 15년/20년에서 20년/30년으로
  - 근거 : ① 형법 제정 당시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대폭 늘어남, ② 무기형과 유기형의 실질적인 격차의 시정
- 사형, 무기형 감경시 상한 규정 신설
  -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를 감경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하는 경우 그 장기를 30년으로 함
- 형의 감경 범위
  - 사형을 감경할 경우 :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30년 이하
  - 무기형을 감경할 경우 : 징역 7년 이상 30년 이하
- 형법 개정에 따른 양형실무의 변화
  - 처단형의 상한이 높아졌다고 하여 종전의 양형이 비율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않았음
  - 학계에서는 ‘법정형의 폭이 양형척도이므로 가장 중한 사안을 법정형의 상한으로, 가장 가벼운 사안을 법정형의 하한에 위치시키고, 그 중간 사안

---

은 법정형의 중간에 위치시켜야 한다.’ 는 견해가 있으나, 재판실무에서 채용되지 않음

## 4. 영국

### ▣ 유기징역형의 상한 관련

- 일반적 유기징역형 상한은 없고, 범죄별로 상한이나 하한 설정됨
- 대부분의 중죄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가석방 심의를 받을 수 있기까지의 최소 복역기간까지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여러 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각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판사는 가장 중한 범죄사실에 정하여진 형기만 복역하게 하는 방식(concurrent sentence)과 각 범죄사실에 정하여진 형기를 합산하여 복역하는 방식(consecutive sentence)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선고함
-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single transaction)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concurrent sentence를 선고함

### ▣ 3대 범죄의 법정형

- 살인 : murder는 필요적 무기징역형. manslaughter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
- 강도(robbery) : 무기징역형까지 가능
- 강간(rape) : 무기징역형까지 가능

## 5. 독일

### ▣ 유기징역형의 상한

- 사형제 폐지. 무기 자유형의 경우 1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허용
- 유기 자유형의 상한은 15년. 경합범의 경우에도 15년 초과할 수 없음

### ▣ 보안감호 제도

- 형법에 보안감호 제도를 두어, 자유형 외 일정한 상습범 내지 누범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보안감호 제도는 절대적 부정기형 제도로서, 10년이 경과 후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 Ⅲ. 양형기준 수정의 기본방향

#### 1. 형법 개정의 취지

- ▣ 개정 법률안에 명시된 개정 취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를 줄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존재하는 제한을 제거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 개정법률안은 5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된 것인바, 위 대안의 개정취지 이외의 통합 이전 5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자 등 반인도적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흉악범에 대한 장기간의 교정이 필요함
  -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므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상향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수정범위

##### 1) 전 범위 수정 필요 입장

- ▣ 유기징역 상한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현행 양형기준 대상범죄 전부에 대하여 가중된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양형기준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

##### 2) 중대 범죄 수정 필요 입장

- ▣ 가중영역 상한만 수정 필요 입장
  - 개정전 형법에 의할 때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가중시 25년)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형이 높아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중대범죄 중에서 중한 유형의 가중영역의 수정만 필요하다는 견해
- ▣ 전 영역 수정 필요 입장
  - 징역 15년이 선고될 범죄에 대하여 선고형이 올라가는 이상 중대 범죄, 예를 들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던 범죄에 대해서도 형이 올라갈 필요가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의 감경/기본/가중영역 모두 수정이 필요하다

---

는 견해

▣ 검토의견

● 개정 형법의 개정 취지 고려

- 개정 형법의 개정 취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사이의 처벌 간극을 제거하는 데 있으므로, 양형기준 수정시 이러한 취지를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함
- 즉, 개정 취지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량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선고 형량이 낮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기존 유기징역형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형을 올릴 필요성이 생겼다고 할 수 없음
- 개정 법률이 대안으로 통합되기 이전의 법률안들의 개정 취지는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과 평균수명의 연장인데, 전자는 중대한 범죄 이외의 형량 상향조정과 무관하고, 후자도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 사이의 간극을 없애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범죄에 국한하여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중대 범죄를 대상으로 한 양형기준 수정

- 따라서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가 비율적으로 상승해야 한다거나 기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형을 정할 수 있었던 개별 범죄들에 대한 형량범위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옳지 않음
- 다만, 기존 유기징역형 상한에 해당하는 범죄의 권고형량이 상승됨에 따라 기존에 그 범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양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던 범죄의 권고 형량이 순차적으로 상향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일본, 프랑스에서 유기징역형 상한 상향 조정 후 무기징역형의 선고비율은 큰 변화 없는데 반하여, 중대범죄의 선고형량이 상승한 경향이 있었음을 참조)
- 그러므로 중대 범죄, 특히 살인범죄의 중한 유형, 가중 영역을 중심으로 기존 형량기준을 수정하되, 그로 인하여 여타 유형 및 영역에 대한 형량기준의 순차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 3.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수정방안

---

## 가. 상정가능한 수정방안

### 1) 유형의 추가 : 제4유형(동기에 있어서 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추가 설정

- 장점 : 현행 3단계 감경/기본/가중 영역구분을 유지한 채 새로운 유형의 신설로 법정형 상한 상승의 문제를 현행 양형기준의 틀 내로 포섭 가능
- 단점 : 범죄마다 유형분류의 기준(살인죄는 동기, 뇌물죄는 뇌물액수, 성범죄는 범행태양, 강도죄는 범행태양)이 달라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중대한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살인죄의 경우 제3유형에서 제4유형을 분리해 내기가 쉽지 않음

### 2) 가중영역의 상한 조정 : 현행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15년인 가중영역에 국한하여 그 형량범위의 상한만 30년으로 상향 조정

- 장점 : 현행 양형기준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 가능. 형량범위의 상한이 15년인 가중영역의 경우 죄질 및 범정에 따라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 중에서 보다 중한 유형을 세분할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분하면 오히려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상한이 15년인 현행 형법 하에서 선고된 사건들 중 무기징역 선고 사건을 제외하면 위 영역을 세분할 수 있는 양형통계자료도 없음. 일단 이 안대로 양형기준을 시행한 후 양형실무의 통계자료가 축적되면, 향후 양형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임
  - 단점 : 사형, 무기징역 감경시 처단형의 상한이 30년이 아니라 50년(형법 제55조 제1항 제1, 2호)이고, 유기징역 가중시 상한이 50년이므로 가중영역의 상한이 50년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는바, 그 경우 가중영역의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양형기준의 설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가중영역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이 너무 많아져 법관별 양형편차가 극심해질 수 있음
- ※ 이 안을 채택하면서, 가중영역의 상한을 25년(또는 30년)으로 정하되, '상한을 가중한 결과 상한이 25년(또는 3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음'이라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3) 유형의 재분류 : 형법 및 특별법상 살인범죄를 통합하여 동기, 목적, 계획성 등을 기준으로 재분류

---

■ 장점 : 살인범죄를 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세분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할 경우, 현재보다 3배 이상 넓어진 유기징역형의 형량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등화된 형량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유기징역형 상한 상향 조정에 따른 살인범죄의 형량범위 재조정이 일관성·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됨. 살인범죄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는 양형인자(동기, 목적, 계획성, 피해자의 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분류에 반영할 수 있음

■ 단점 : 개별 살인범죄의 유형 재분류 및 죄질의 상호 비교를 통한 형량 범위의 설정 및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음. 구체적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살인범죄유형이 있을 수 있음

※ 이 안을 채택하면서, 가중영역의 상한을 25년(또는 30년)으로 정하되, '상한을 가중한 결과 상한이 25년(또는 3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음'이라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나. 검토의견

■ 비교법적으로 유례없이 넓어진 유기징역형의 형량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등화된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양형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인범죄의 유형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와 같은 유형재분류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양형인자를 주된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것인지, 범죄유형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것인지, 유형 간 죄질 및 형량비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험적 통계자료가 없는 형량구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구체적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살인사건(강간살인, 강도살인 등 포함)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범죄사실, 범행동기 및 양형인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분류기준 또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 15~50년의 형량구간은 경험적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부득이 규범적 관점에서만 권고형량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으나, 위와 같은 구체적 사건들의 판결문 분석을 통한 유형 구분 및 죄질 비교는 형량범위의 도출에 있어서도 일응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IV. 구체적 수정안

---

## 1. 대상범죄

### ■ 선정원칙

- 범죄군 별로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살인범죄 및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살인범죄를 대상으로 함

### ■ 대상범죄

#### ● 형법상 살인범죄

- 살인/존속살해(제250조)
- 강간등살인(제301조의2)
- 강도살인(제338조)
- 인질살해(제324조의4)

#### ● 특별법상 살인범죄

- 약취유인살인(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강간등살인(성폭법 제9조 제1항)

## 2. 유형분류의 기준

- 살인범죄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양형요소로는 동기 및 목적, 피해자의 수, 계획성, 범행수법(흉기 사용,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 사체 손괴 여부, 피해자의 범행 취약성 등을 들 수 있음
- 현행 양형기준이 동기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단일한 기준에 집착할 경우 일관성은 추구할 수 있으나, 유례없이 넓어진 유기징역형의 형량구간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그렇다고 하여 동기와는 성격이 다르고 형량 결정에서의 중요도가 다른 계획성, 수법 등과 결합하여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유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유형 간 죄질 비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일용 동기를 기준으로 하되, 목적이 동기와 결합되어 있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살인의 동기 및 목적을 함께 고려하고 강간살인 등과 같이 중대범죄와 살인죄가 결합된 경우를 이에 준하여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유형 분류

- 
- ▣ 살인범죄 사건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동기 및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인범죄의 유형화 시도

## V. 동기 및 목적에 따른 살인범행의 구체적 유형화

### 1. 살인범죄 판결문 분석

- ▣ 대상
  -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선고된 단일 피해자 대상 단순 일죄 1심 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약취·유인살인, 인질살해 사건(동종 및 이종 경합범 사건은 제외)
  - 무죄, 공소기각, 소년사건, 미수사건은 제외
- ▣ 분석방법 : 판결문의 범죄사실 및 양형이유에서 살인 동기 및 목적을 중심으로 대표적 사례들을 계획범·우발범 여부를 구분함
- ▣ 분석결과 : 사례들을 동기 및 목적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유형에서 I유형까지 분류할 수 있음

### 2. 대표적 사례 중심 유형화

#### 가. A유형 :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 살해욕의 발로 또는 충족으로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나. B유형 : 강간살인 등

##### 1) 강간/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 살해 목적 강간과정 또는 강간 후 살해
- 강간(강제추행) 과정에서 반항하자 우발적 살해

##### 2)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의2)

- 살해 목적 약취·유인 후 살해
- 약취·유인 과정에서 반항하자 우발적 살해

---

### 3)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 재물 강취 목적 또는 채무 면제 목적으로 살해 후 강취
- 살해 목적 강취과정 또는 강취 후 살해
- 폭행·협박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우발적 살해
- 절도범이 체포 면탈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살해

### 다. C유형 : 보복살인 등

#### 1) 특가법상 보복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하게 할 목적 살인

#### 2) 금전, 불륜, 조직이익 등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배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라. D유형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마. E유형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면제 불응 이유 살인
- 채무면제 독촉 이유 살인

### 바. F유형 : 원한관계 등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청산 요구에 앙심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 품고 살인

- 
- 시비(말다툼, 몸싸움) 끝에 격분하여 살인

#### 사. G유형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아. H유형 : 극도의 생계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자녀 살해

- 극도의 생계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자녀 살해

#### 자. I유형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 VI. 살인범죄 유형분류 방안

### 1. 개요

- A~I유형을 죄책이 유사한 범죄끼리 묶어서 4~6개의 유형으로 분류
- 제1안 내지 제3안은 C~I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죄책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A, B유형을 어떻게 통합 또는 세분화하는가에 따라 방안을 달리 구성한 것임
- ‘계획적 살인’, ‘잔혹한 범행수법’, ‘사체손괴’, ‘피해자의 범행 취약성’, ‘존속살인’은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2인 이상 살해’의 처리방안에 관하여는 추가 검토 필요
  -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
  -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 2. 구체적 유형분류안

---

**가. 제1안 : 6개 유형 분류안**

- 1유형 : H, I 유형
- 2유형 : E, F, G유형
- 3유형 : C, D유형
- 4유형 : B-2, 3유형(약취유인살인, 인질살인, 강도살인)
- 5유형 : B-1유형(강간등살인)
- 6유형 : A유형

**나. 제2안 : 5개 유형 분류안**

- 1유형 : H, I 유형
- 2유형 : E, F, G유형
- 3유형 : C, D유형
- 4유형 : B유형
- 5유형 : A유형

**다. 제3안 : 4개 유형 분류안**

- 1유형 : H, I 유형
- 2유형 : E, F, G유형
- 3유형 : C, D유형
- 4유형 : A, B유형

제1안    제2안    제3안



### 3. 유형별 선고형 분포

#### 가. 개요

■ 대상 사건

-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선고된 단일 피해자 대상 단순 일죄 1심 살인, 강간살인, 강도살인, 약취·유인살인, 인질살해 사건( 동종 및 이종 경합범 사건은 제외하되, 특별/일반가중인자로 반영된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와의 이종경합범 사건은 포함시킴)
- 무죄, 공소기각, 소년사건, 미수사건은 제외

■ 분석방법

- 판결문의 범죄사실, 양형이유를 통하여 살인 동기(목적)의 A~형 해당 여부, 계획범·우발범 여부의 구분을 통하여 형량별 선고사건수를 분석

나. 유형별 선고형 분포

단위: 명

유형	대표적 사례	계획범 여부	선고형량(년)																		합계					
			사형	무기	25	22	20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유형		계획범											2		2			1	1						6	
		우발범								1			1		1		4	7	1	2	10	14				41
2유형		계획범		4				1	1	25	1	6	15	5	11		1	1	2				1			74
		우발범		7		1	4	1	4	1	41	3	19	71	7	106	20	43	63	25	30	10	7			
3유형		계획범		1						2				3												8
		우발범											1	2				1								
4유형		계획범		10						7																18
		우발범		7			1				6	1	2			2										
5유형		계획범		1																						1
		우발범		1										2												
합계		계획범	0	16	0	0	3	0	1	1	34	1	6	20	5	13	0	1	2	3	0	0	1	0	0	107
		우발범	0	15	0	1	5	1	4	1	48	4	22	76	7	109	20	48	70	26	32	20	21	0	0	530

※ G유형(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은 대부분 F유형(원한관계 등으로 인한 살인)과 중첩되어 있고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F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함  
 ※ C-1유형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

■ ‘극도의 생계곤란 비관 자녀등 살인’ 판결례 추가 분석

(1) 분석대상

- 사건 : 최근 3년간 선고된 1심 사건 사례(영아살해 제외) 추가 분석

- 분석 내용 : 동반자살 시도 여부, 피고인, 피해자, 동기, 계획범 여부와 선고형 간 관계

## (2) 동반자살 시도/계획범 여부에 따른 선고형 분석

### (가)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례

사건번호	피고인	피해자	동기	계획범 여부	선고형	비고
목포10-19	모	딸(2세)	어려운 경제여건	우발범	3년(집유)	
경주09-40	모	딸(3개월)	산후우울증, 신병 비관	우발범	3년(집유)	
서울남부09-271	모	아들(1세)	우울증	우발범	3년(집유)	
수원08-722	모	아들(5개월)	산후우울증	우발범	3년(집유)	
대전07-197	모	아들(7세)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우발범	3년	
포항08-4	남편	처	우울증, 생활고 비관	우발범	4년	
안산08-336	모	아들(8세)	생계곤란	우발범	4년	사채유기
부산동부09-153	모	딸(7세), 아들(3세)	극도의 생계곤란	우발범	4년6월	
대구09-479	모	아들(16세)	생활고 비관	계획범	5년	
대구09-13	부	아들(12세), 딸(8세)	생활고 비관	계획범	10년	

### (나) 동반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피고인	피해자	동기	계획범 여부	선고형	비고
북부10-16	모	딸(2개월)	선천적장애 출생 비관	우발범	3년(집유)	
천안10-3	모	딸(7일)	원치 않은 임신, 양육 부담	우발범	3년(집유)	
청주09-253	처	남편(86세)	노환, 치매, 발작	우발범	3년(집유)	
광주09-273	모	아들(5개월)	우울증, 양육 부담	우발범	3년(집유)	
서부09-178	모	딸(2개월)	우울증, 양육 부담	우발범	3년(집유)	
청주09-105	모	딸(1세)	우울증, 양육 부담	우발범	3년(집유)	
광주08-79	모	딸(18개월)	산후우울증, 양육 부담	우발범	3년(집유)	
창원07-262	모	아들(1개월)	양육 부담	우발범	3년(집유)	
창원07-196	모	딸(3개월)	미숙아, 양육 부담	우발범	3년(집유)	
대구09-558	모	딸(1세)	산후우울증, 육아 부담	우발범	2년6월	
부산08-587	모	아들(12개월)	우울증, 양육에 대한 고통	우발범	3년	
대구09-48	아들	부(92세)	부양에 대한 부담	우발범	4년	
천안08-2	모	아들(2세)	장애 출생, 경제적 어려움	우발범	4년	
창원07-202	모	아들(6세)	미숙아 출생, 양육 부담	우발범	4년	
의정부09-192	모	아들(9세)	우울증, 경제적 곤궁 비관	우발범	7년	
부천09-134	모	딸(8개월)	육체적·정신적 양육 부담	우발범	7년	사채유기
서부09-135	부	아들(9세)	경제적 처지 비관	계획범	7년	
순천07-42	부	딸(5세)	가정형편, 양육 부담	계획범	10년	사채유기
의정부09-91	모	아들(10세), 딸(7세)	양육문제, 부부간 갈등	우발범	15년	

## (3) 분석결과

### (가) 선고형 분포

- 주로 징역 3년~4년형이 많이 선고됨(3년형 선고시 거의 집행유예)

- 
- 5년~15년형이 선고된 사례도 발견됨

**(나) 중형(5년~15년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양형인자**

- 계획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 피해자가 복수
- 사체유기

**(다) 범행동기**

- 구체적 범행동기
  - 피해자가 선천적 장애
  - 원치 않은 임신·출산
  - 양육에 대한 부담
  - 산후 우울증
  - 육아스트레스
  - 고령, 치매 등으로 사망 임박한 상태에서 발작(피부양자)
- 동반자살 시도 여부는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유아인 경우 살해동기 및 행위태양에 있어 영아살해(10년 이하 징역형)와 유사함
- 우울증 등에 의한 살인의 경우가 많음

**(4) 양형위원회 논의 결과**

- 양형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극도의 생계곤란을 비관하여 자녀를 살해한 경우’를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에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동반 자살의 필요적 요건 기재 여부’, ‘범행 대상으로서 자녀의 명시적 기재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의 끝에,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에 일률적으로 포섭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존재하는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정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참고 : 우리나라의 형 집행 실태 및 전망

---

## 1) 평균 연령 및 기대수명

- 전체 무기수형자의 수는 1,085명(그 중 여성 무기수 44명)
- 남성 무기수의 평균 연령 39.0세(기대수명 75.14세), 여성 무기수의 평균연령 43.7세(기대수명 81.89세)
- 기대수명에서 평균수명의 차이 남성 무기수 36.14년, 여성 무기수 38.19년
- 평균연령과 기대수명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무기징역형은 징역 35년~40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2) 가석방

- 무기징역형 선고받은 수형자들이 평균 징역 20년 미만의 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출소됨
- 개정 형법에서는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이 20년으로 상향 조정됨
- 가석방을 통한 실제 복역기간 측면에서 볼 때, 무기징역형은 20년 이상에 해당됨

## 4. 검토

- ▣ 유형별 선고형 분포 분석결과, 강간살인이 강도살인에 비하여 형량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정형이 동일한 점, 피해자의 수, 계획적 범행 여부, 잔혹한 범행 수법 여부 등의 양형인자에 따라 형량이 많이 좌우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유형을 분리하기보다 하나의 유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A유형은 형법 제250조 살인죄에 속하나,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비난가능성이 높은 동기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범죄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 B유형보다 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 따라서 1~5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2안이 타당함
  - ▣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동기 및 목적에 있어서 특히 참작하거나 비난할 사유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2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보충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위원회에서 ‘극도의 생계곤란을 비관하여

자녀 등의 가족을 살해한 경우'는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에 일률적으로 포섭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위 보충적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단순히 제2유형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임

## Ⅶ.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1. 유형분류

유형	구분	구체적 사례
1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li> <li>○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li> </ul> </li> <li>■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2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청산 요구에 앙심 품고 살인</li> <li>○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 품고 살인</li> <li>○ 시비(말다툼, 몸싸움) 끝에 격분하여 살인</li> </ul> </li> <li>■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li> <li>○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li> </ul> </li> <li>■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변제 불응 이유 살인</li> <li>○ 채무변제 독촉 이유 살인</li> </ul> </li> <li>■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3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 살인</li> <li>○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하게 할 목적 살인</li> </ul> </li> <li>■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li> </ul> </li> </ul>

유형	구분	구체적 사례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배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b>■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b>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b>■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b> <b>■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b>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b>■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b> <b>■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b> <b>■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b> <b>■ 강도살인(형법 제338조)</b>
5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b>■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b> <b>■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b> <b>■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b>

▶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제2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2. 형량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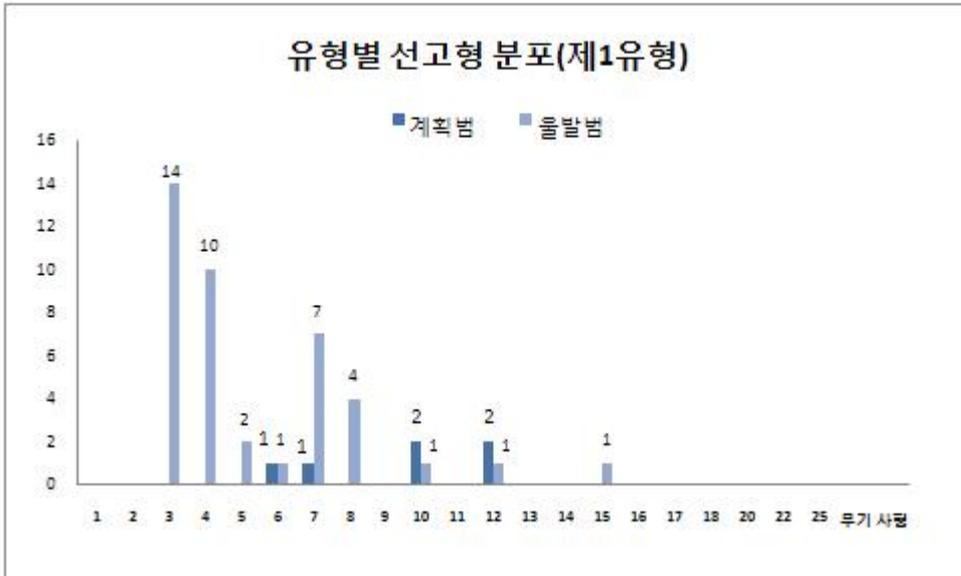
### 가. 형량범위 설정의 전제사항

- 제1~3유형은 경험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하고, 제3~5유형은 경험적 접근방법과 규범적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설정
- 우발적 살인범행의 비율이 계획적 살인범행의 비율보다 높으므로 우발적 살인을 기본으로 삼고, 계획적 살인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제3~5유형의 가중영역은 형량범위의 상한을 개방하는 한편,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기 이외의 중요한 가중인자가 존재할 경우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량의 선고가 가능하게 함

- ▣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기징역형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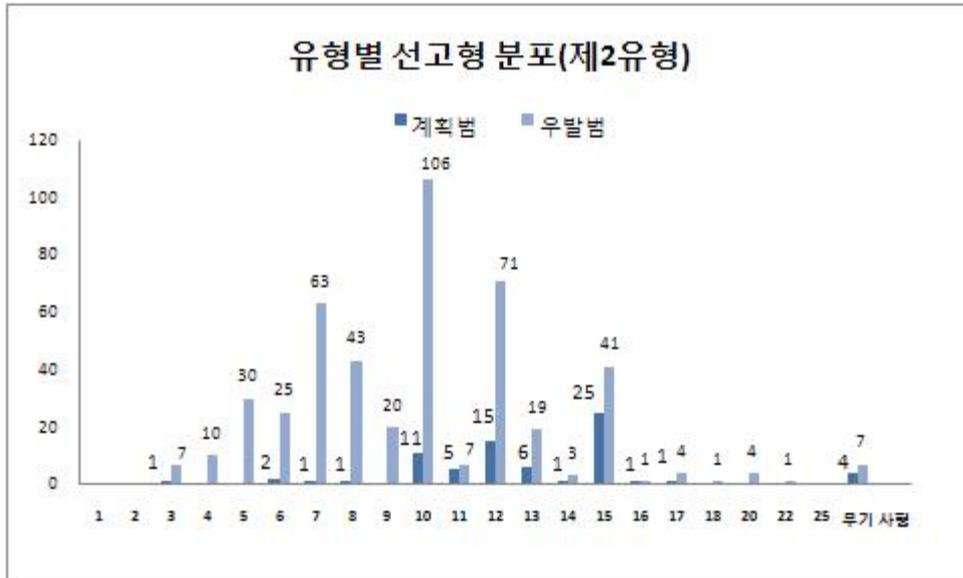
## 나. 구체적 설정방법

### 1) 제1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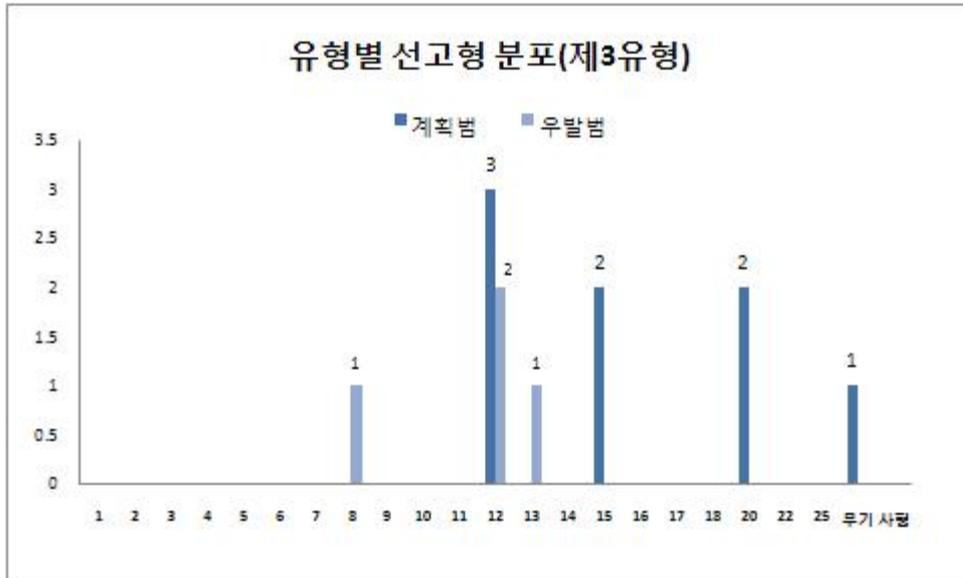
- 제1유형에 속하는 단순일죄 살인사건은 주로 3년~15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징역 3년형, 4년형 및 7년형이 가장 많이 선고되었음
-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의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기본영역 형량 범위를 4년~6년으로 설정

### 2) 제2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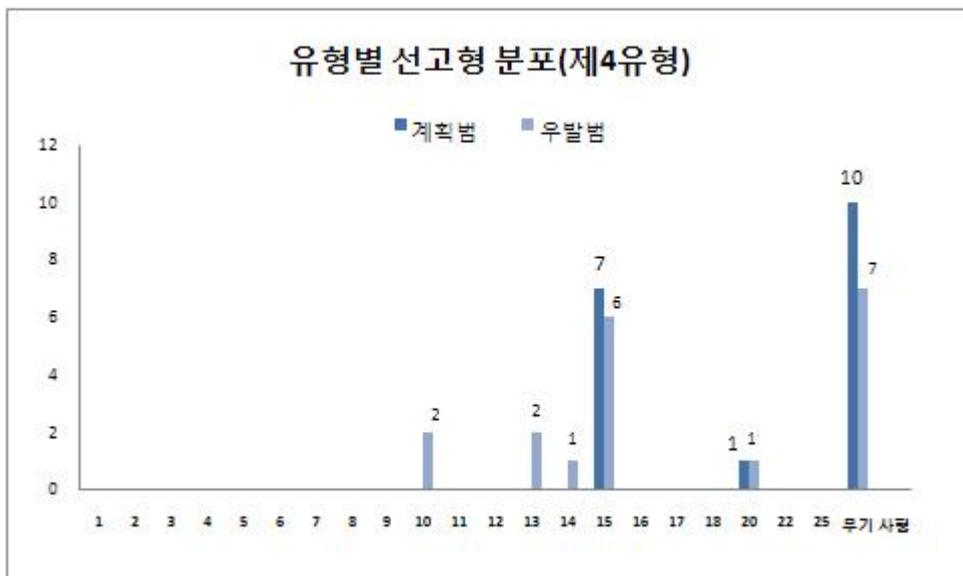
- 제2유형에 속하는 단순일죄 살인사건은 징역 3년~무기징역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나, 징역 10년형과 12년형이 가장 많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형량을 전부 포섭하는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할 경우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이 몰각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음. 일응 6년~17년으로 형량범위를 한정 후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으로 포섭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함. 따라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9년~13년으로 설정함

### 3) 제3유형



- 제3유형에 속하는 단순일죄 사건은 8년~무기징역까지 선고되었는데, 징역 12년, 15년, 20년형의 선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12년~16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을 개방하며, 무기징역의 선택도 가능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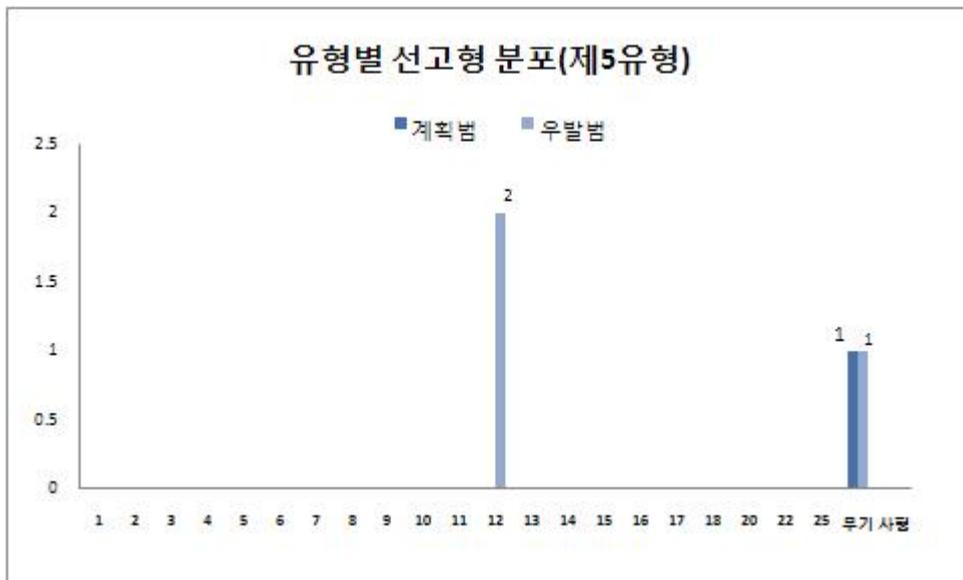
#### 4) 제4유형



- 제4유형에 해당하는 단순일죄 사건은 10년~무기징역까지 선고되었는데, 징역 15년형, 무기징역형의 선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유형 해당 범죄들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종래 무기징역형 선고비율이 높았으므로 기본영역에 유기징역형 상한의 15년 제한으로 인하여 16년에서 30년형 사이의 형량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경우도 상당할 것이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17년~22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을 개방하며, 무기징역형의 선택도 가능할 수 있게 함

## 5) 제5유형



- 5유형에 해당하는 단순일죄 사건은 찾기 어려우며, 징역 12년형과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음
- 5유형은 살인범죄 중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게 표출된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규범적 관점에서 4유형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부여하기로 하여 기본영역을 22년~27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을 개방하며, 무기징역의 선택도 가능할 수 있게 함
- 과거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현재 유기징역형의 형량구간인 15년~30년(또는 50년)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부득이 형량범위의 폭도 기존 양형기준보다는 넓어질 수밖에 없음

## 다. 형량범위안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제2유형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제3유형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무기 이상
제4유형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무기 이상
제5유형	18년 - 23년	22년 - 27년	25년-, 무기 이상

## 라. 살인미수범의 형량범위

### 1) 재검토 필요성

- 현행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1/2(1유형), 1/3(2유형, 3유형)로 각 감경하여 적용’이라는 서술식 기준으로 정해져 있음
-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미수범의 형량범위 상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현행 양형기준에서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강도살인의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살인범죄와 통합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게 됨으로써 미수범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제4유형에 해당하는 강간등살인, 약취·유인살인, 인질살해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미수범 감경을 할 경우의 처단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가 됨. 따라서 4유형 해당 범죄는 작량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5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함

### 2) 현행 살인미수범죄의 양형기준

#### ■ 현행 양형기준상 미수범의 형량범위표

○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표,  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영역을 표시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2년6월 - 3년6월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2유형	2년 - 3년	2.6년 - 3.6년	3.3년 - 4.3년
제3유형	2.6년 - 3.6년	3.3년 - 4.3년	4년 - 10년

※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 : 제1유형의 감경/기본/가중영역, 제2유형의 감경/기본영역, 제3유형의 감경영역

▣ 형량범위 설정 배경

- 형법은 유기징역의 법률상 감경의 경우 1/2 감경만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1/3로의 감경은 법적 근거가 없음
- 현행 ‘살인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보고(손철우 전문위원)’에 의하면, 살인범죄 양형기준 제2, 3유형의 경우 1/2로 감경할 경우 그 형량범위가 너무 높아 과거 양형실무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모든 유형의 형량범위를 1/2로 감경할 경우 과거 양형실무와 불일치하는 비율이 60%에 이른다고 함) 1/3로 감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함<sup>1)</sup>
- 따라서 현행 살인미수범죄 형량범위는 경험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종래 양형실무의 약 70~80%를 포섭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짐

### 3) 살인미수 형량범위 설정시 고려할 사항

- 경험적 양형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종래 양형실무의 70~80%를 포섭할 수 있는 형량범위가 설정되어야 함
- 집행유예 가능범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함
- 제4유형은 중대범죄(강간, 강도, 약취·유인, 인질)와의 결합범으로서 기본 중대범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량범위가 낮게 설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4) 살인미수 형량범위 수정방안

▣ [1안] : 4유형 미수범에 특수한 형량범위를 설정

- 근거

1) 손철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초안 종합보고”, 26쪽

- 강간살인미수의 경우 일괄적으로 기수범 형량범위의 1/3로 감경할 경우, 강간살인미수가 강간상해보다 경하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 강간살인, 강도살인, 약취·유인살인, 인질살인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이고 유기징역형이 없으므로, 다른 유형의 살인죄와는 상이함

● 문제점

- 유형별로 통일적인 감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이외에 강간살인, 강도살인, 약취·유인살인, 인질살인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움
- 이 방안은 결국 구체화된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나, 위 조건을 만족하는 별도의 형량범위를 제시하기 어려움. 즉, 강간살인미수죄는 13세미만 대상 강간상해보다 높은 형량범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13세미만 대상 강간상해의 형량범위는 살인미수 5유형의 1/3 감경안보다 이미 높기 때문임

■ [2안] : 1, 2, 3, 5유형과 동일한 감경비율로 미수범죄 형량범위 설정

● 근거

- 강간살인, 강도살인, 약취·유인살인, 인질살인죄를 다른 살인범죄 유형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살인미수를 모두 처벌하고 있으므로 여타 유형의 살인미수범죄의 형량범위 감경비율과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단순히 형량범위의 1/3로 감경할 경우, 강도상해, 강간상해의 형량범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 있음

■ 검토

- [1안]과 같이 기본 중대범죄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량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4유형만 특수하게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방법은, 강간상해, 강도상해, 인질상해, 약취·유인상해의 형량범위는 각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위 각 형량범위와 비교하여 각 살인미수의 형량범위를 중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그 경우 강도살인미수를 일반강도, 특수강도와 비교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여 2가지 미수안을 제기해야 하는지, 강간살인미수, 인질약취유인살인미수의 경우도 그 유형분류에 따라 몇 가지 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한 유형인 5유형의 미수범보다 형량범위가 낮아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함

- 강간살인미수, 약취·유인살인미수, 인질살해미수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성립시키는 특수한 형량범위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1안]은 채택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기본적으로 [2안]을 채택하여 유형별 감경비율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되, 기본 중대범죄의 상해/치상죄의 형량범위와 역전현상을 해결하고,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의 감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달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상한을 2/3로, 하한을 1/3로 각 감경하여 적용

## 5) 종합적 검토

### ▣ 집행유예 가능범위

- 집행유예 가능범위는 제1유형의 감경/기본/가중영역, 제2유형의 감경/기본영역, 제3유형의 감경영역으로 현행 양형기준과 동일. 다만, 제4유형 및 제5유형은 살인범죄의 유형 중 가장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불가
- 현행 양형기준보다 형량범위의 폭이 넓어지므로 종래 양형실무의 선고 형량범위를 포섭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한편, 미수범 중 동기나 결과가 중한 사안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짐
- 따라서 현행 양형기준에 비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제4유형 미수범과 기본 중대범죄 상해/치상과의 형량범위 비교

-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제1-1유형)	1년6월 - 4년	2년 - 5년	3년 - 6년
		일반강간,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제1-2유형)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제1-3유형)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2	13세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미만 대상	/의제강간 (제2-1유형)			
		강제추행 (제2-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상해 /치상	강제유사성교 (제2-3유형)	5년 - 8년	7년 - 10년	8년 - 12년
		강간 (제2-4유형)	7년 - 10년	9년 - 13년	11년 - 15년, 무기징역

-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의 강간(제2-4유형)과 비교했을 때, 강간살인미수 감경영역의 형량범위가 4년8월~12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가 5년8월~14년 8월, 가중영역의 형량범위가 6년8월 이상으로 하한은 모두 낮으나 상한은 높아서 구체적 선고형의 선택에 있어서 형량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강도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강도상해/치상과 비교했을 때, 강간살인미수범죄 감경영역의 형량범위가 상, 하한이 모두 높으므로 형량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안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2년6월-4년	3년-5년	4년-7년
제2유형	3년-6년	5년-8년	6년-9년
제3유형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제3유형과 비교했을 때, 강간 살인미수 감경영역의 형량범위가 4년8월~12년, 기본영역의 형량범위가 5년 8월~14년8월, 가중영역의 형량범위가 6년8월 이상으로 하한은 낮으나 상한은 높아서 구체적 선고형의 선택에 있어서 형량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 VIII.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살인 범행</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사체손괴</li> <li>○ 잔혹한 범행수법</li> <li>○ 존속인 피해자</li> <li>○ 약취·유인 목적이 살인, 간음, 추행 등 비난할 만한 목적인 경우(제4유형의 경우)</li> <li>○ 강도강간범인 경우(제4유형의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li> <li>○ 중한 상해</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li> <li>○ 특강(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가담</li> <li>○ 피해자 유발(보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체유기</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구호 후송</li> <li>○ 상당 금액 공탁</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제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 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li> <li>○ 진지한 반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명정상태에서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2010. 7. 15. 공개된 성범죄 양형기준(수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 IX.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범행</li> <li>○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중지미수</li> <li>○ 피해자 유발(강함)</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한 상해</li> <li>○ 피해회복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li> <li>○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알코올중독</li> <li>○ 위험한 물건 휴대</li> <li>○ 잔혹한 범행수법</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자수</li> <li>○ 진지한 반성</li> <li>○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피고인이 고령</li> <li>○ 피해자 유발(보통)</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소극가담</li> <li>○ 범행 후 구호 후송</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li> <li>○ 반</li> </ul>

---

## X. 기타 중대범죄의 형량범위 수정 및 설정방안

### 1. 수정 및 설정방안

#### 가. 현행 양형기준의 수정안

##### ▣ 뇌물범죄

###### ● 뇌물수수 제6유형

- 가중영역 형량범위가 ‘11년 이상, 무기’로 상한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형량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임

##### ▣ 성범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중 강간유형(제2-4유형)

- 가중영역의 상한을 개방하는 것으로 수정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유형

- 가중영역의 상한을 개방하는 것으로 수정

##### ▣ 강도범죄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강도치사 유형

- 성범죄 양형기준의 수정으로 강간치사의 형량범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강도치사의 형량범위가 강간치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짐

- 강간치사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최초 양형기준 설정시 강간치사와 형량범위가 동일하였던 점, 강간살인과 강도살인이 살인범죄 제4유형에 해당하여 형량범위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강간치사와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중영역의 상한은 개방하는 것으로 수정

#### 나. 설정작업 중인 양형기준안

##### ▣ 약취·유인범죄

###### ●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유형

- 강간치사, 강도치사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살인범죄 제4유형에 해당하여 강간살인 및 강도살인과 형량범위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강간치사와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중영역의 상한은 개방하는 것으로 수정

## 2. 범죄군별 양형기준(수정)안

### 가. 성범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강간 (제2-4유형)	7년 - 10년	9년 - 13년	11년 - , 무기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 , 무기

### 3. 강도범죄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 , 무기

### 4. 약취·유인범죄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 , 무기

---

## XI.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개선안

### 1. 개선 필요성

#### 가. 현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이하 ‘평가원칙’ 이라 함)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함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나. 평가원칙의 미비점

-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상이하게 해석될 소지 있음
  - 주요참작사유와 반대되는 일반참작사유가 단순히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보는 견해
    - 예 : 주요부정사유 2개, 주요긍정사유 0개, 일반긍정사유 2개, 일반부정사유 1개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와 반대되는 일반참작사유의 개수 차이가 단순히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보는 견해
    - 예 : 주요부정사유 2개, 주요긍정사유 0개, 일반긍정사유 3개, 일반부정사유 1개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가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참작사유가 다수인 경우에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평가원칙의 문제점
  - 참작사유 평가에 있어서 일반참작사유에 과도한 효력 부여
  - 종합적 비교·평가 권고 영역에 해당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여지

---

가 있음

## 다. 평가원칙의 개선 필요성

- 최초의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성급하게 집행유예기준 제도의 기본틀을 훼손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
- 다만, 평가원칙에 있어서 문언적 의미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은 조속히 이루어져 할 것임

## 2. 평가원칙의 개선안

### 가. 기본방향

- 주요참작사유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 권고영역이 일반참작사유의 다수 존재에 의하여 쉽게 변경되지 않도록 함

### 나. 평가원칙의 수정안

-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규정을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로 수정함
  - 주요긍정(부정)사유가 2개 존재하거나 주요긍정(부정)사유가 주요부정(긍정)사유보다 2개 많을 때는, 일반부정(긍정)사유가 3개 이상 존재하거나 일반부정(긍정)사유가 일반긍정(부정)사유보다 3개 이상 많을 경우
  - 주요긍정(부정)사유가 3개 존재하거나 주요긍정(부정)사유가 주요부정(긍정)사유보다 3개 많을 때는, 일반부정(긍정)사유가 4개 이상 존재하거나 일반부정(긍정)사유가 일반긍정(부정)사유보다 4개 이상 많을 경우